

발 간 등 록 번 호

연구보고서 2012-12-0002



#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문제 결정요인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문제  
결정요인

#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

우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존엄성과 권익을 추구한다. 아동은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 일동은 아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임을 상기하면서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여,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우리는 아동 권리 옹호자로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 다짐을 밝힌다.



## 사명 선언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 능력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헌신한다.



## 행동 강령

하나, 우리는 아동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에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전문인다운 자세를 유지하며, 책임감 있게 실천한다.

# 실천수칙

## I. 아동에 대한 실천

### 1. 아동 이익 최우선

- 아동을 모든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에게 최선의 행정적·사법적·사회적·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2. 개별 욕구 존중

- 아동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알 권리 및 의사표현 존중

- 아동에게 그들이 받을 서비스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 아동에게 자신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 4. 차별 금지

- 아동의 인종, 성별, 종교, 언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동의 신념, 관습, 문화 등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 5. 사생활 존중 및 보호

- 아동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단, 아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6. 발달권 보장

- 아동이 발달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아동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 Ⅱ. 가족에 대한 실천

### 1. 가족 지원

- 아동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에게 심리적·정서적·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 2. 부모 교육

- 보호자에게 아동의 권리, 발달과정,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한다.

## Ⅲ. 사회에 대한 실천

### 1. 아동 권리 홍보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한다.

### 2. 아동 권리 교육

- 아동은 권리의 주체임과 그 권리 보호는 모든 국민의 책무임을 알린다.
- 아동학대는 생애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임을 교육하여 그것을 예방한다.
-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3. 협력체계 구축

- 아동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 4. 국가 정책 참여

-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련 정책 입안 과정과 입법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IV. 전문가로서의 실천

### 1. 윤리적 책임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 2. 전문가적 판단

-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정보 보호

- 직무상 알게 된 모든 정보를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련 지침을 따른다.
-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은 그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4. 옹호자 역할 수행

- 아동학대 관련인의 의사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거나, 아동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한다.

### 5. 자기 계발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능력과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2008. 11. 19. 공포





## 머 리 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로 인해 위험에 처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더욱 발전된 아동 안전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국적으로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다문화가족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학대 발생 사례의 주요 현황들을 제시하였고,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정서 및 정신건강 측면이 다소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의 영향 요인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실천적 함의 등을 모색해보았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대상들에 있어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고유의 위험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가 발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피해아동들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들과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주시고 용기 내어 신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2년 12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장화정**



# 목 차

<b>I 서론</b>	<b>1</b>
<b>II 이론적 배경</b>	<b>5</b>
1. 국내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현황	7
2.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 발생	8
3. 다문화가족 내 내재화 문제 실태	10
4. 아동학대와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	11
<b>III 연구방법</b>	<b>13</b>
1. 분석자료	15
2. 변수	15
3. 자료분석방법	17
<b>IV 연구결과</b>	<b>19</b>
1.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요인 비교	21
1)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21
2)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비교	25
3)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비교	27
4)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특성 비교	28

<b>2.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요인 비교 .....</b>	<b>31</b>
1)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	31
2)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비교 .....	35
3)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거주상태 비교 .....	38
4)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소득수준 비교 .....	40
5)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비교 .....	41
6)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특성 비교 .....	43
 <b>3.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아동학대 관련 요인 비교 .....</b>	<b>44</b>
1)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	44
2)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여부 비교 .....	45
3)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 발생 빈도 비교 .....	47
 <b>4.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 문제 결정요인 .....</b>	<b>47</b>
1)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우울 결정요인 .....	48
2)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불안 결정요인 .....	49
3)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무력감 결정요인 .....	50
 <b>V 결론 및 제언  </b>	<b>53</b>
 <b>참고문헌 .....</b>	<b>61</b>

## 표 목 차

<표 1>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 보호율 .....	9
<표 2> 본 연구의 활용 변수 .....	16
<표 3>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24
<표 4>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	26
<표 5>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	27
<표 6> 피해아동의 특성 .....	30
<표 7>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35
<표 8>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	37
<표 9> 학대행위자의 거주상태 .....	39
<표 10> 학대행위자의 소득수준 .....	40
<표 11>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	42
<표 12> 학대행위자의 특성 .....	43
<표 13>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과의 관계 .....	45
<표 1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 여부 .....	46
<표 15> 학대 발생 빈도 .....	47
<표 16>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우울 결정요인 .....	49
<표 17>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불안 결정요인 .....	50
<표 18>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무력감 결정요인 .....	51

## 그림 목 차

<그림 1> 피해아동의 성별 .....	22
<그림 2> 피해아동의 연령 .....	23
<그림 3> 피해아동의 교육기관 .....	24
<그림 4>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	26
<그림 5>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	28
<그림 6> 학대행위자의 성별 .....	32
<그림 7> 학대행위자의 연령 .....	33
<그림 8> 학대행위자의 교육수준 .....	34
<그림 9>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	38
<그림 10> 학대행위자의 거주상태 .....	39
<그림 11> 학대행위자의 소득수준 .....	41
<그림 12>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	42
<그림 1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45
<그림 1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 여부 .....	46



# 서론







## I. 서론

에릭슨(Erikson)의 심리사회발달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적절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각 생애주기별 단계에 따른 과업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낮은 자존감, 불신감, 우울증, 수치심 등을 경험하게 된다(이재연 외, 2008). 특히 아동기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때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심리 상태가 우울해질 뿐 아니라 불안정한 문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김순규, 2007; 김혜영·장화정, 2002; 엄명용, 2001; 장화정, 2004; 전대양, 2000). 또한 아동학대는 개인 차원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사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Widom, 1996; Zingraf et al., 1993). 최근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되어(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은폐성, 지속성, 반복성의 특성을 지니므로(배화옥, 2004) 학대 양상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단순 신체 손상을 경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반사회적 행동, 정신분열증, 자살시도, 학대 대물림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재엽·조학래·양혜원, 2003; 안동현 외, 2003; 안혜영, 1998; 표갑수, 1993).

이렇듯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대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개입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예방사업이 등장하였으며, 2000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국가 차원의 공적 체계가 마련된 이후, 피해아동, 학대행위

자 및 가족 대상의 개입,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 등 다양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해마다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는 아동학대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국민의 인식 증진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의 발전을 의미하는 바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교육에서의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학대 사건 또한 꾸준히 접수되었다. 이로 인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sup>1)</sup> 내에 다문화가족 관련 항목을 신설하여,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및 가족의 다문화가족 여부를 선택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 사례는 2009년 181건, 2010년 243건, 2011년 231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문화 차이에서 오는 적응 스트레스 등으로 아동학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이 중요함에도 다문화가족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정책(김지혜·정익중, 2009), 언어(김혜리·김은하, 2010), 인식 및 태도(심우엽, 2010), 프로그램 효과성(신효선·김도희, 2008) 등에 그쳐 있으며, 아동학대 관련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중 내재화 문제(우울·불안·무력감)의 결정 요인을 밝히고자 하며, 이를 통해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1)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이란 보건복지부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는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한 사항들을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음.



# 이론적 배경

---



## II. 이론적 배경

### 1. 국내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현황

다문화가족의 의미를 법 및 학술적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법적 정의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여기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경험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의미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법무부 장관의 귀화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의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함께 가족을 구성할 경우 다문화가족에 해당한다. 또한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정의된 다문화가족의 학술적 의미를 탐색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광성의 연구(2012)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란 우리와 상이한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포함된 가정을 의미하며,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다문화결혼이주자,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그리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을 뜻한다(김범수 외, 2007).

최근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국내 거주 중인 이주민이 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가 급속히 형성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의 현황(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조사현황)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내 아동 수는 2009년 105,490명, 2010년 121,935명,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문제 결정요인

2011년 151,154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단일 민족 국가라는 민족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흡수되는 것에 있어 다소 어려운 양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인구의 증가와 사회적 차원의 홍보 등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정서가 감소되었으며, 점차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광성, 2012).

## 2.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 발생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법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한계, 생활 습관 및 문화 차이 등으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외국인주민조사현황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 보호율<sup>2)</sup>을 산출하여 보면 2009년 1.72%, 2010년 1.99%, 2011년 1.53%이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아동 보호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추계 인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의 전체 아동 인구수는 9,688,376명이며,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조사현황에 의한 2011년 기준 다문화가족 아동 인구수는 151,154명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다문화가족에 속하는 전체 아동을 약 9,537,222명으로 추정해볼 수 있고, 2011년 비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 사례는 5,827건에 해당한다.<sup>3)</sup> 이를 바탕으로 할

2) 피해아동 보호율이란 통계청에서 제시한 추계 아동 인구를 기준으로 아동 인구 1,000명 당 피해 아동의 인구를 산출한 결과임

때, 2011년 비다문화가족의 피해아동 보호율은 0.61%이며, 이와 비교하여 살펴볼 때, 2011년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 보호율인 1.53%은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는 2,000명당 3명 정도로, 비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는 2,000명당 1명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위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 다문화가족 내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대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 보호율

구 분	다문화가족 아동	다문화가족		피해아동 보호율
	총 인구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2009	105,490명	181건		1.72%
2010	121,935명	243건		1.99%
2011	151,154명	231건		1.53%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조사현황;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다문화가족 내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학대의 원인 등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문화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위험요인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Moon & Deweaver, 2005). 또한 2011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특성 중 하나는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며, 부부 및 가족 갈등 또한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내 학대 유

3) 2011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는 총 6,058건이며, 다문화가족 내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한 사례는 231건에 해당함(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형을 보면 정서학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방임, 신체학대 순이다. 정서학대가 두드러졌는데, 문화 및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정서학대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3. 다문화가족 내 내재화 문제 실태

다문화가족의 경우, 이질적 문화 속에서 다양한 적응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한국 주재 국제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문화 수용 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 관계에 대해 분석한 채송희의 연구(2009)에 따르면 본래 경험하였던 것과 상이한 문화를 경험하게 되면 우울과 불안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한 농촌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또한 이와 유사하게 도출되었는데,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이인선, 2004), 다문화가족에 있어 내재화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다문화가족과 유사하게 새로운 환경과 분위기에 적응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은 정치·경제·문화 등의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우울과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효림, 2007; 김미령, 2005; 목혜연, 2007; 이기영, 2002; 이기영 외, 2009).



#### 4. 아동학대와 내재화 문제와의 관계

학대와 정신건강 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신체학대의 경우, 신체적 손상을 겪기도 하지만 이와 더불어 폭력으로 인한 공포심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녀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하면 수치감 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인영 외, 2006). 또한 아동기의 학대 경험은 우울, 불안을 발생시키며(이아영, 2011; 장화정, 2004; Dubowitz & Bennett, 2007; Schuck & Widom, 2005), 심한 경우, 자살 충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조미숙, 2012).

학대 경험으로 발생하는 내재화 문제는 아동기에만 한정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등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을 경우, 높은 수준의 우울 성향을 나타내는데(김은경·이정숙, 2009),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종결되지 않고 성인에 도달한 이후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연구되었다(전해숙, 2008; Aalsma & Brown, 2008; McCarty et al., 2008; Ttofi et al., 2011).

이와 더불어 2011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에 의하면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 특성 중 우울, 불안, 무력감 등이 해당하는 정서·정신건강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적응·행동, 발달신체건강 순이었다. 비다문화가족의 특성에는 적응·행동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정서·정신건강이었다. 이렇듯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사료된다.





# 연구방법





### III. 연구방법

####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아동학대 사례 중 2011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어 아동학대로 판정된 6,058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 중 다문화가족 내 아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총 231건에 해당한다.

#### 2. 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중 범주형으로 처리된 변수는 피해아동의 성별, 교육기관, 가족유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특성, 학대행위자의 성별, 교육수준, 직업유형, 거주상태,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특성, 그리고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변수, 우울, 불안, 무력감이며, 이 외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의 연령, 학대 발생 빈도, 아동학대 스크리닝 점수는 연속형 변수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학대 발생 빈도의 경우, '일회성',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2~3개월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2~3일에 한 번', '거의 매일'을 각각 1에서 9로 코딩하였다. 다음에 제시된 <표 2>에는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 문제 결정 요인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을 나열하였다.

<표 2> 본 연구의 활용 변수

구분	변수		설명	비고
종속 변수	우울		피해아동에게 우울/불안/무력감이 있을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코딩	범주형
	불안			
	무력감			
독립 변수	성별		남성 1, 여성 0	범주형
	연령		아동의 연령을 만으로 계산하여 처리함	연속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 1, 비대상자 0	범주형
	학대 발생 빈도		학대발생이 잦을수록 수치가 높음	연속형
	아동학대 스크리닝 점수	아동	각 문항의 점수를 평균화하였으며 0에서 1사이의 범위	연속형
보호자				
가족				
생활환경				

여기서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되는 도구로서 아동요인, 보호자요인, 행위자요인, 가족요인, 생활환경요인 및 보호요인(총 6개 범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2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요인, 보호자요인, 가족요인, 생활환경요인을 선정하여 독립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각각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AS 9.2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아동학대 사례를 대상으로 피해아동의 관련 요인(성별, 연령, 교육기관, 가족유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을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으며,  $\chi^2$  및 t검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때, 피해아동 특성의 경우, 대상자들이 중복 응답하였기 때문에 범주형 변수임에도  $\chi^2$ 검증을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2011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비교하였다.

둘째,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의 행위자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형, 거주상태,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으로 나누어  $\chi^2$  및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 때, 피해아동과 마찬가지로 학대행위자 특성은 대상자들이 중복 응답하였으므로 2011년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 비교하였다.

셋째, 이 외의 아동학대 관련 요인 즉,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학대 발생 빈도를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을 하였으며, 위의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관련 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chi^2$  및 t검증을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특성 중 두드러지게 나타난 정서·정신건강 중 내재화 문제인 우울, 불안 및 무력감에 미치

는 결정 요인을 밝히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때, 독립변수는 아동학대 스크리닝 점수, 학대 발생 빈도, 피해아동의 성별 및 연령,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로 설정하였다.





# 연구결과

---



## IV. 연구결과

### 1.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요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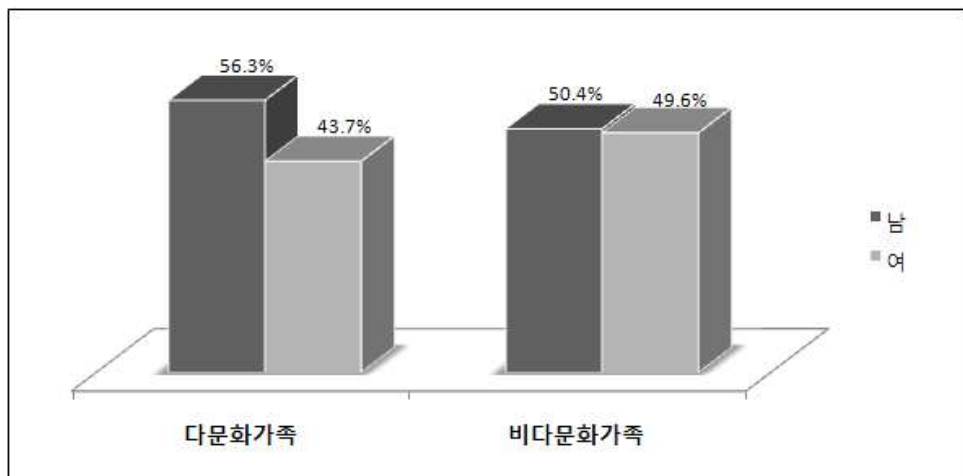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2011년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피해아동의 특성(성별, 연령, 교육기관, 가족유형,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대상 여부,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특별히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 사례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피해아동의 사례를 구분하여 변인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 1)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및 학대 발생 당시 피해아동이 소속되어 있는 교육기관 변수를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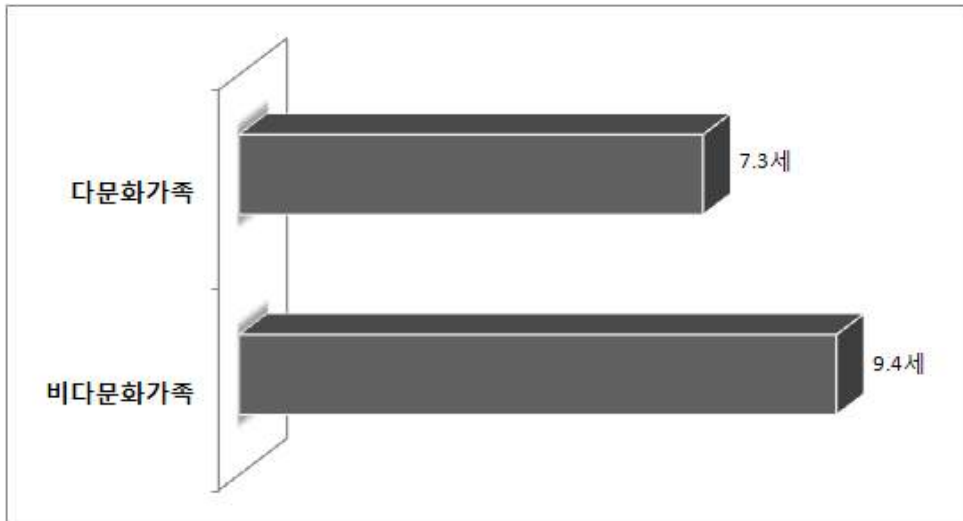
먼저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성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 내 남아는 130명(56.3%), 여아는 101명(43.7%)으로 남아가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비다문화가족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남아 2,939명(50.4%), 여아 2,888명(49.6%)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통계청에서 집계한 2011년 기준, 연령별 추계인구를 살펴보면 아동의 인구 중 남아는

5,733,810명(52.2%), 여아는 5,248,944명(47.8%)으로 남자의 수가 다소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 부분과 동일한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chi^2$ 제곱 검증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성별 분포의 차이를 파악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0$ ,  $p>0.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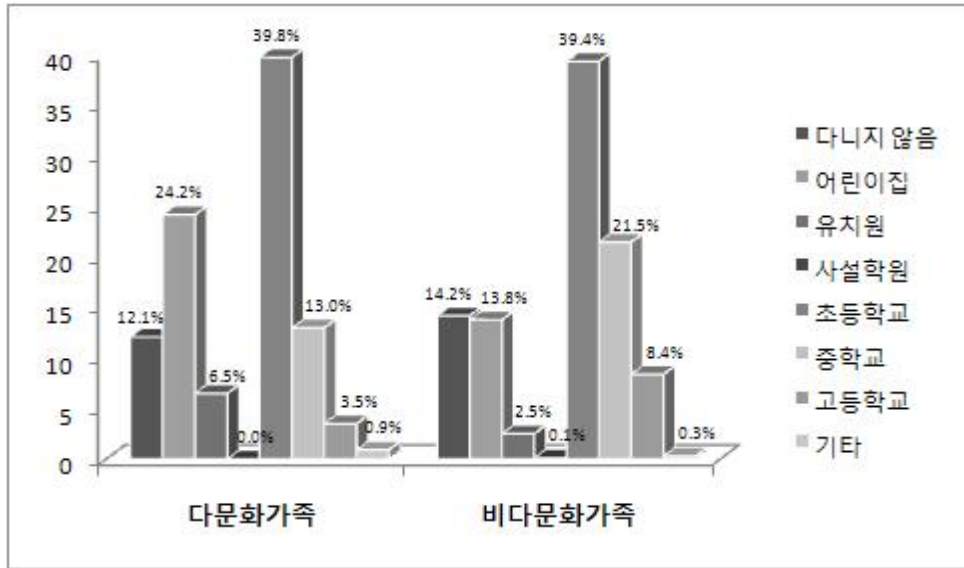
<그림 1> 피해아동의 성별

다음으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연령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연령은 평균 7.3세( $SD=4.3$ )로 나타났으며, 비다문화가족의 경우 9.4세( $SD=4.7$ )로 다문화가족 내 아동에 비해 다소 높은 연령을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두 집단 간 피해아동 연령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6.5$ ,  $p<0.001$ ).



<그림 2> 피해아동의 연령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로 신고된 당시, 피해아동이 소속되어 있던 교육기관의 분포에 대해 살펴보면, 교육기관은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학원’, ‘초·중·고등학교’, ‘기타’, ‘다니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이 속한 교육기관을 보면, 초등학생이 92명(39.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어린이집 56명(24.2%), 중학교 30명(13.0%), 그리고 현재 교육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아동은 28명(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경우를 이와 비교하면 다문화가족과 마찬가지로 초등학교에 속한 아동이 2,293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250명(21.5%), 교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동은 826명(14.2%), 어린이집의 경우는 802명(13.8%)이었다. 두 집단 간 피해아동 교육기관의 분포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0$ ,  $p<0.001$ ).



<그림 3> 피해아동의 교육기관

<표 3> 피해아동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chi^2 / t$
성별 N(%)	남	130(56.3)	2,939(50.4)	3.0
	여	101(43.7)	2,888(49.6)	
연령	M(SD)	7.3(4.3)	9.4(4.7)	6.5***
교육 기관 N(%)	다니지 않음	28(12.1)	826(14.2)	48.3***
	어린이집	56(24.2)	802(13.8)	
	유치원	15(6.5)	144(2.5)	
	사설학원	0(0.0)	3(0.1)	
	초등학교	92(39.8)	2,293(39.4)	
	중학교	30(13.0)	1,250(21.5)	
	고등학교	8(3.5)	492(8.4)	
	기타	2(0.9)	17(0.3)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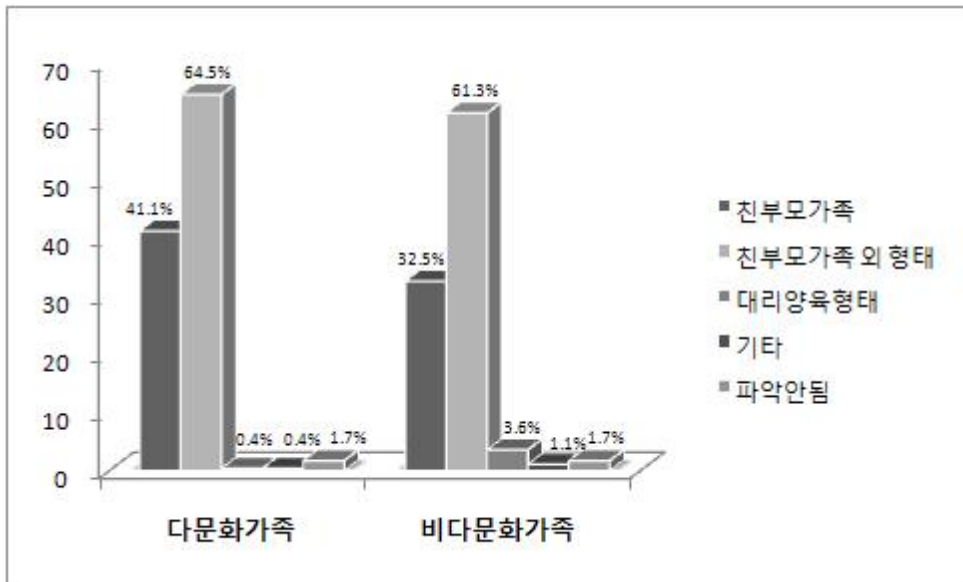
## 2)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비교

본 절에서는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을 살펴보았으며, <표 4>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친부와 친모로 구성된 친부모가족 유형에 속한 피해아동이 95명(41.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부자가정과 모자가정은 각각 51명(22.1%), 38명(16.5%)이었다. 비다문화가족의 경우, 친부모가족이 1,893명(32.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부자가정 1,508명(25.9%), 모자가정 889명(15.3%) 순이었다. 두 집단을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유형의 순서는 유사하지만, 집단 간 분포를 비교 분석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chi^2=3.0$ ,  $p<0.001$ ). 이는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다문화가족의 경우, 친부모가족 유형의 비중이 높은 것에서 기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다문화가족 41.1% vs. 비다문화가족 32.5%).

<표 4>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구분		다문화 가족	비다문화 가족	$\chi^2$	
가족 유형 N(%)	친부모가족	95(41.1)	1,893(32.5)	46.8***	
	부자가정	51(22.1)	1,508(25.9)		
	모자가정	38(16.5)	889(15.3)		
	미혼부·모가정	2(0.9)	178(3.1)		
	재혼가정	33(14.3)	408(7.0)		
	친인척보호	1(0.4)	265(4.6)		
	동거	5(2.2)	289(5.0)		
	소년소녀가정	0(0.0)	21(0.4)		
	대리 양육 형태	가정위탁	0(0.0)		28(0.5)
	입양가정	0(0.0)	30(0.5)		
	시설보호	1(0.4)	154(2.6)		
기타	1(0.4)	66(1.1)			
파악안됨	4(1.7)	98(1.7)			

\*p<.05, \*\*p<.01, \*\*\*p<.001



<그림 4> 피해아동의 가족유형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문제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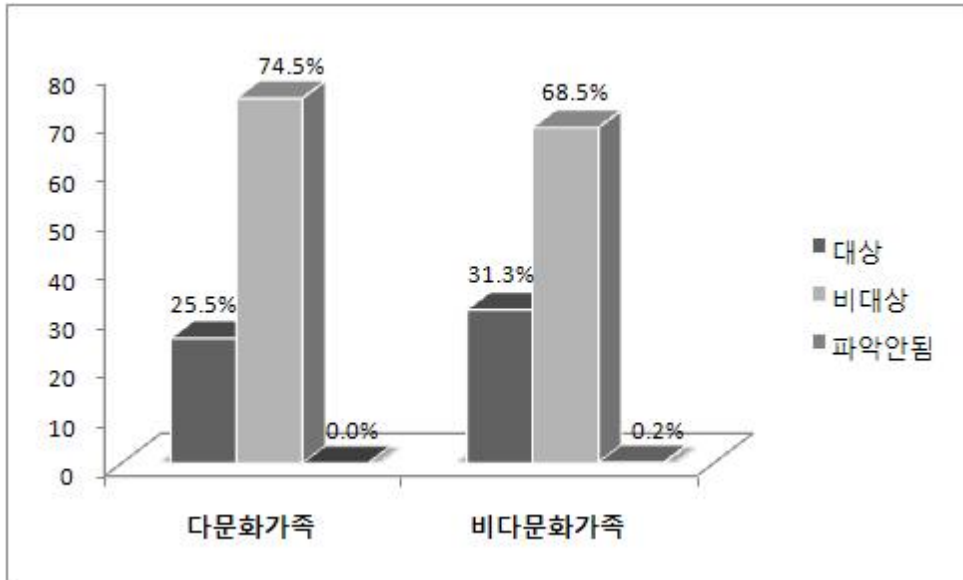
### 3)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국민기초 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비교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국민기초 생활수급권 대상 여부의 상이함이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59명(25.5%),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72명(74.5%)으로 보다 많은 피해아동이 수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급을 받는 아동은 1,822명(31.3%), 그렇지 않는 경우는 3,994명(68.5%)이었으며, 수급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은 0.2%에 해당하는 11명이었다. 또한 두 집단 간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9$ ,  $p>0.05$ ).

<표 5>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chi^2$
국민기초 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N(%)	대상	59(25.5)	1,822(31.3)	3.9
	비대상	172(74.5)	3,994(68.5)	
	파악안됨	0(0.0)	11(0.2)	

\* $p<.05$ , \*\* $p<.01$ , \*\*\* $p<.001$



<그림 5> 피해아동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 4)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특성 비교

본 절에서는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피해아동의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신체 건강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피해아동의 특성은 2011년도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경우 대상자들이 중복적으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2011년 아동학대 사례인 6,058건을 초과하였다. 따라서 카이 제곱분석과 같은 통계적 분석을 활용하여 두 집단 간 분포의 차이를 살펴보지 못하였으며, 단순히 수치를 제시하였다(<표 6> 참조).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경우, 여러 특성 중 정서·정신건강이 두드러졌으며(49.4%), 다음으로는 적응·행동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문제 결정요인

다(21.8%). 반면 비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은 적응·행동적 특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38.0%), 정서·정신건강은 35.1%에 해당하였다. 본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경우,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정서·정신건강 측면의 특징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현황 및 발생원인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정서·정신건강 문제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우울인 점을 감안하여 피해아동의 내재화 문제 즉, 우울, 불안 및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내용은 4장(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 문제 결정요인)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다.

<표 6> 피해아동의 특성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전체	
장애 N(%)	시각장애	0 (0.0)	2 (0.0)	2 (0.0)
	청각장애	1 (0.2)	4 (0.0)	5 (0.0)
	지체장애	1 (0.2)	18 (0.1)	19 (0.1)
	지적장애	3 (0.6)	169 (1.2)	172 (1.3)
	자폐성장애	1 (0.2)	15 (0.1)	16 (0.1)
	언어장애	0 (0.0)	10 (0.1)	10 (0.1)
	뇌병변장애	1 (0.2)	18 (0.1)	19 (0.1)
	기타장애	0 (0.0)	5 (0.0)	5 (0.0)
	소계	7 (1.3)	241 (1.6)	248 (1.7)
정서· 정신 건강 N(%)	주의산만	49 (9.3)	731 (5.3)	780 (5.5)
	과잉행동	20 (3.8)	315 (2.3)	335 (2.3)
	오락중독	5 (0.9)	101 (0.7)	106 (0.7)
	인터넷중독	7 (1.3)	154 (1.1)	161 (1.1)
	정서문제	0 (0.0)	0 (0.0)	0 (0.0)
	불안	62 (11.7)	1,105 (8.0)	1,167 (8.2)
	애착문제	32 (6.1)	515 (3.7)	547 (3.8)
	무력감	21 (4.0)	449 (3.3)	470 (3.3)
	우울	24 (4.5)	464 (3.4)	488 (3.4)
	낮은 자아존중감	23 (4.4)	572 (4.2)	595 (4.2)
	성격 및 기질문제	11 (2.1)	286 (2.1)	297 (2.1)
	탐식 및 결식	7 (1.3)	132 (1.0)	139 (1.0)
	소계	261 (49.4)	4,824 (35.1)	5,085 (35.6)
	적응· 행동 N(%)	반항·충동·공격성	19 (3.6)	768 (5.6)
거짓말		8 (1.5)	573 (4.2)	581 (4.1)
도벽		13 (2.5)	421 (3.1)	434 (3.0)
가출		6 (1.1)	608 (4.4)	614 (4.3)
약물·흡연·음주		4 (0.8)	442 (3.2)	446 (3.1)
성문제		5 (0.9)	160 (1.2)	165 (1.2)
학교 부적응		23 (4.4)	736 (5.3)	759 (5.3)
사회성 문제		0 (0.0)	0 (0.0)	0 (0.0)
잘은 결석		5 (0.9)	418 (3.0)	423 (3.0)
늦은 귀가		8 (1.5)	370 (2.7)	378 (2.6)
학습문제		24 (4.5)	737 (5.4)	761 (5.3)
소계	115 (21.8)	5,233 (38.0)	5,348 (37.4)	
발달 신체 건강 N(%)	신체 발달지연	6 (1.1)	182 (1.3)	188 (1.3)
	언어문제	28 (5.3)	344 (2.5)	372 (2.6)
	급만성질환	7 (1.3)	84 (0.6)	91 (0.6)
	영양결핍	3 (0.6)	125 (0.9)	128 (0.9)
	대소변문제	8 (1.5)	108 (0.8)	116 (0.8)
	위생문제	14 (2.7)	491 (3.6)	505 (3.6)
소계	66 (12.5)	1,334 (9.7)	1,400 (9.8)	
특성없음 N(%)	50 (9.5)	1,386 (10.1)	1,436 (10.0)	
기타 N(%)	29 (5.5)	744 (5.4)	773 (5.5)	
총 N(%)	528 (100.0)	13,762 (100.0)	14,290 (100.0)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문제 결정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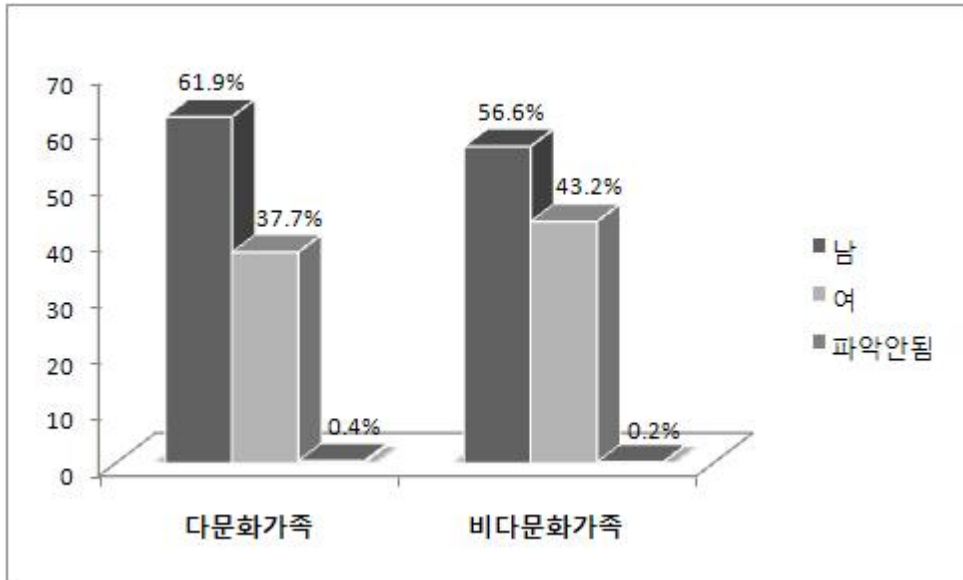
## 2.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요인 비교

본 장에서는 2011년에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학대행위자와 관련된 요인들(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형, 거주상태,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이전 장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 내 발생 사례와 그렇지 않는 사례를 비교하였다.

### 1)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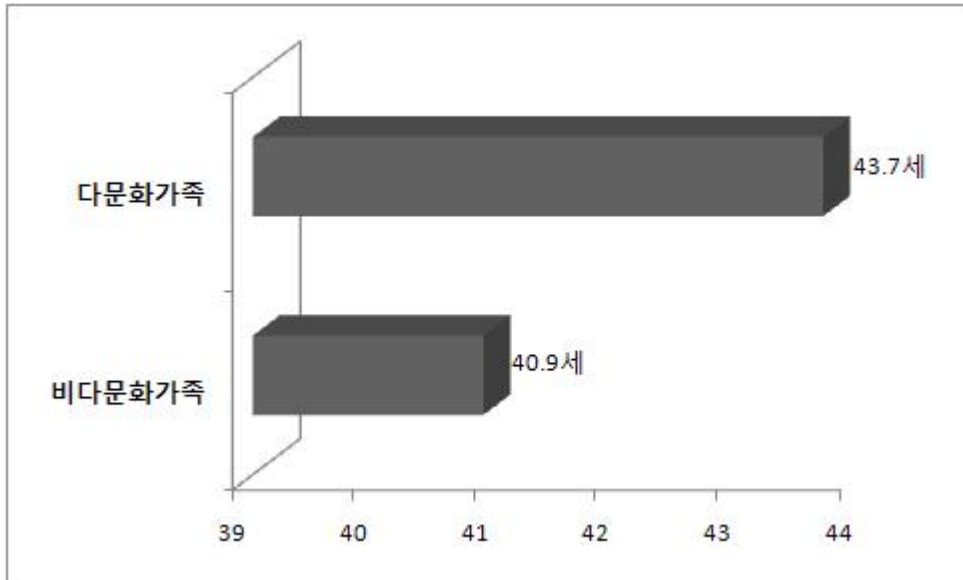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을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을 통해 제시되었다.

가장 먼저 학대행위자의 성별 분포를 파악한 결과, 다문화가족의 경우 남성은 143명(61.9%), 여성은 87명(37.7%)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는 1명(0.4%)이었다. 비다문화가족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남성 3,299명(56.6%), 여성 2,519명(43.2%)이며, 파악이 되지 않는 학대행위자는 9명(0.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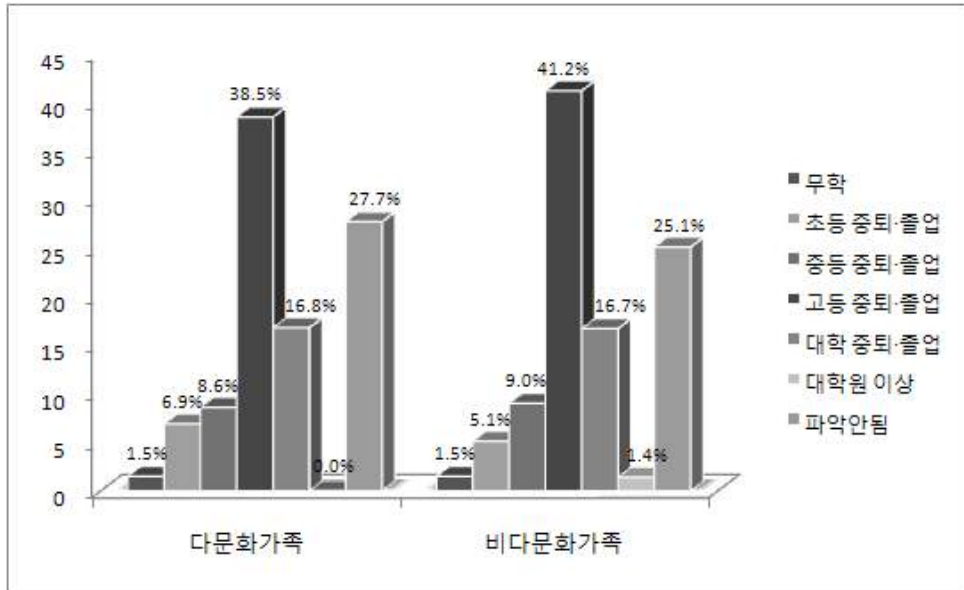
<그림 6> 학대행위자의 성별

다음은 두 집단 간 학대행위자의 연령을 분석하였는데, 다문화가족의 피해아동 대상 학대행위자의 연령은 평균 43.7세(SD=9.8), 비다문화가족의 경우는 평균 40.9세(SD=10.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3.9, p<0.001$ ).



<그림 7> 학대행위자의 연령

학대행위자들의 교육수준 정도를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으며, 두 집단 간 교육수준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였다( $t=19.6$ ,  $p<0.05$ ).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의 경우, 학대행위자가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가 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35.0%), 다음은 파악 안 됨 64명(27.7%), 대학졸업 33명(14.2%), 중등졸업 17명(7.3%) 순이었다. 비다문화가족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인 학대행위자가 2,243명(38.4%), 파악 안 됨 1,461명(25.1%), 대학졸업 909명(1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학대행위자의 교육수준



<표 7> 학대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chi^2$
성별 N(%)	남	143(61.9)	3,299(56.6)	3.7
	여	87(37.7)	2,519(43.2)	
	파악안됨	1(0.4)	9(0.2)	
연령	M(SD)	43.7(9.8)	40.9(10.7)	3.9***
교육 수준 N(%)	무학	3(1.5)	89(1.5)	19.6*
	초등중퇴	7(3.0)	58(1.0)	
	초등졸업	9(3.9)	237(4.1)	
	중등중퇴	3(1.3)	142(2.4)	
	중등졸업	17(7.3)	384(6.6)	
	고등중퇴	8(3.5)	162(2.8)	
	고등졸업	81(35.0)	2,243(38.4)	
	대학중퇴	6(2.6)	63(1.1)	
	대학졸업	33(14.2)	909(15.6)	
	대학원이상	0(0.0)	79(1.4)	
	파악안됨	64(27.7)	1,461(25.1)	

\*p<.05, \*\*p<.01, \*\*\*p<.001

## 2)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비교

다문화가족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무직인 상태의 학대행위자가 57명(24.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노무직은 18.6%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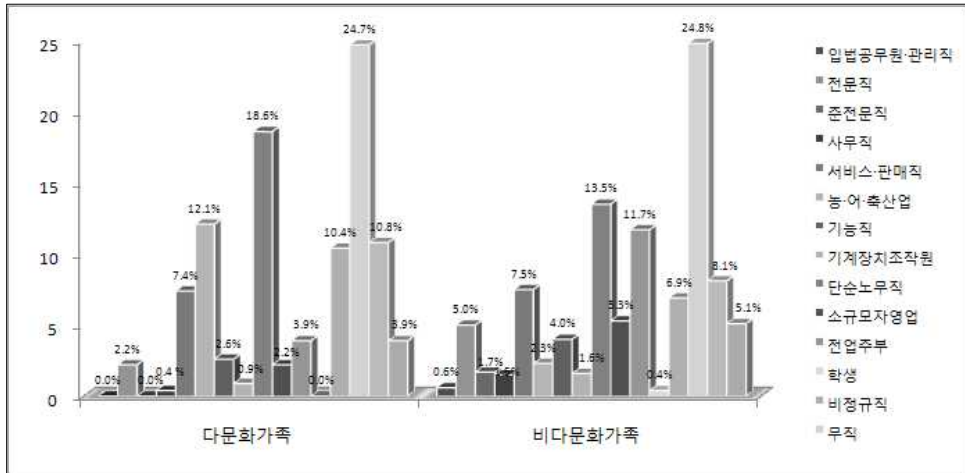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문제 결정요인

해당하는 43명이었다. 또한 농·어·축산업의 경우 28명(12.1%), 기타와 비정규직은 각각 25명(10.8%), 24명(10.4%)으로 나타났다. 바다문화가족도 무직 상태의 학대행위자가 1,446명(24.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단순노무직은 13.5%에 해당하는 786명, 전업주부는 683명(11.7%)이었다. 또한 기타는 474명(8.1%), 서비스 및 판매직은 439명(7.5%)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에서 동일하게 무직 및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학대행위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다른 직업 유형의 분포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점은 두 집단 간 직업유형 분포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통계 분석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chi^2=119.7, p<0.001$ ).

<표 8>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chi^2$
입법공무원 ·관리직	0(0.0)	36(0.6)	119.7***
전문직	5(2.2)	289(5.0)	
준전문직	0(0.0)	96(1.7)	
사무직	1(0.4)	90(1.5)	
서비스·판매직	17(7.4)	439(7.5)	
농·어·축산업	28(12.1)	135(2.3)	
기능직	6(2.6)	235(4.0)	
기계장치조작원	2(0.9)	93(1.6)	
단순노무직	43(18.6)	786(13.5)	
소규모자영업	5(2.2)	307(5.3)	
전업주부	9(3.9)	683(11.7)	
학생	0(0.0)	23(0.4)	
비정규직	24(10.4)	400(6.9)	
무직	57(24.7)	1,446(24.8)	
기타	25(10.8)	474(8.1)	
파악안됨	9(3.9)	295(5.1)	

\*p<.05, \*\*p<.01, \*\*\*p<.001



<그림 9>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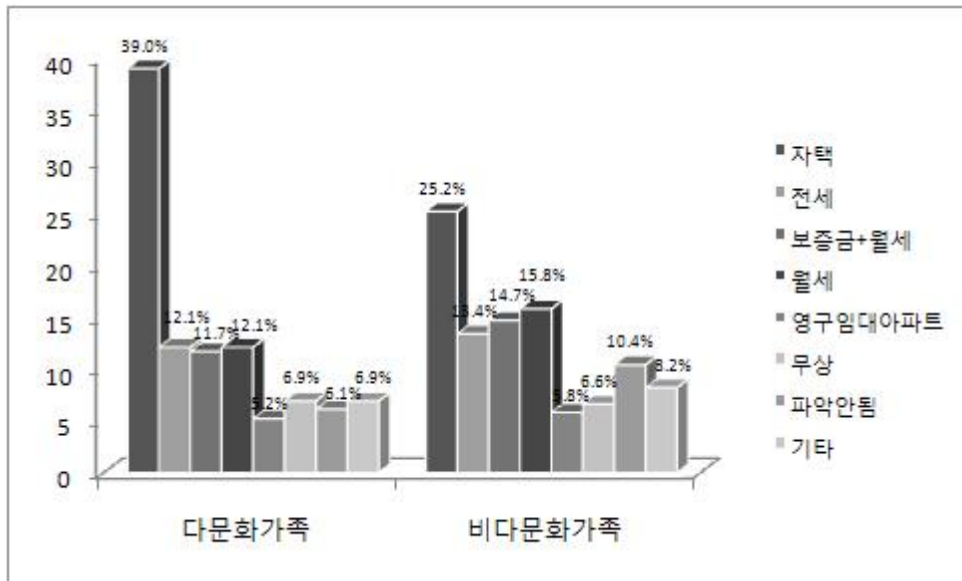
### 3)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거주상태 비교

자택, 전세, 월세 등의 유형으로 나누어 학대행위자의 거주상태를 분석하여 보면 다문화가족 피해아동 사례의 경우, 자택에 거주하는 학대행위자가 39.0%에 해당하는 90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와 월세는 각각 28명(12.1%), 보증금+월세에 해당하는 학대행위자는 전·월세와 유사한 수준인 27명(11.7%)이었다. 반면 비다문화가족 사례의 경우, 다문화가족과 마찬가지로 자택에 거주하는 학대행위자가 1,469명(2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월세로 921명(15.8%), 보증금+월세 855명(14.7%), 전세 780명(13.4%) 순이었다. 두 집단 간 학대행위자 거주상태의 분포 정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매우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chi^2=24.6, p<0.001$ ).

<표 9> 학대행위자의 거주상태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chi^2$
자택	90(39.0)	1,469(25.2)	24.6***
전세	28(12.1)	780(13.4)	
보증금+월세	27(11.7)	855(14.7)	
월세	28(12.1)	921(15.8)	
영구임대아파트	12(5.2)	335(5.8)	
무상	16(6.9)	383(6.6)	
파악안됨	14(6.1)	605(10.4)	
기타	16(6.9)	479(8.2)	

\*p<.05, \*\*p<.01, \*\*\*p<.001



<그림 10> 학대행위자의 거주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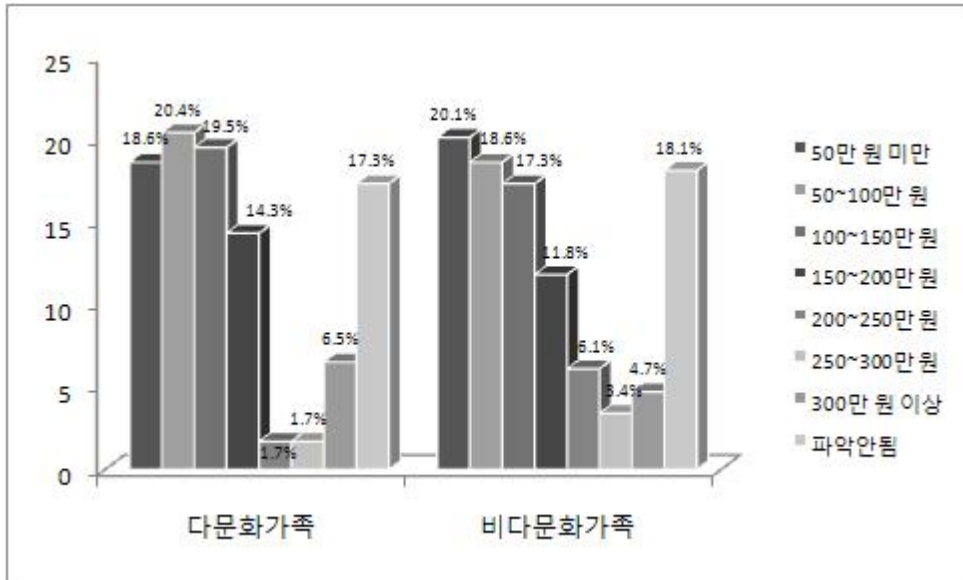
#### 4)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소득수준 비교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의 소득 수준을 '50만 원 미만', '50~100만 원', '100~150만 원' 등의 구간으로 나누어 파악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다문화가족 피해아동 대상의 학대행위자의 경우, 월 소득이 50~100만 원인 경우가 47명(20.4%)으로 가장 많았으며, 100~150만 원 구간(45명, 19.5%)과 50만 원 미만의 구간(43명, 18.6%)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비다문화가족 피해아동 대상 사례의 경우, 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보고하는 경우가 1,169명(20.1%)이었으며, 다음은 50~100만 원(1,083명, 18.6%)과 100~150만 원(1,006명, 17.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 소득 수준의 차이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chi^2=12.9$ ,  $p>0.05$ ).

<표 10> 학대행위자의 소득수준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chi^2$
50만 원 미만	43(18.6)	1,169(20.1)	12.9
50~100만 원	47(20.4)	1,083(18.6)	
100~150만 원	45(19.5)	1,006(17.3)	
150~200만 원	33(14.3)	690(11.8)	
200~250만 원	4(1.7)	353(6.1)	
250~300만 원	4(1.7)	200(3.4)	
300만 원 이상	15(6.5)	273(4.7)	
파악안됨	40(17.3)	1,053(18.1)	

\* $p<.05$ , \*\* $p<.01$ , \*\*\* $p<.001$



<그림 11> 학대행위자의 소득수준

### 5)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비교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분포에 있어 상이함이 존재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 사례의 학대행위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54명(23.4%),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68명(72.7%)으로 보다 많은 피해아동이 수급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 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는 학대행위자는 총 9명(3.9%)이었다. 비다문화가족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급을 받는 학대행위자는 1,429명(24.5%), 그렇지 않는 경우는 4,137명(71.0%)이었으며, 수급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학대행위자는 4.5%에 해당하는 261명이었다. 두 집단 간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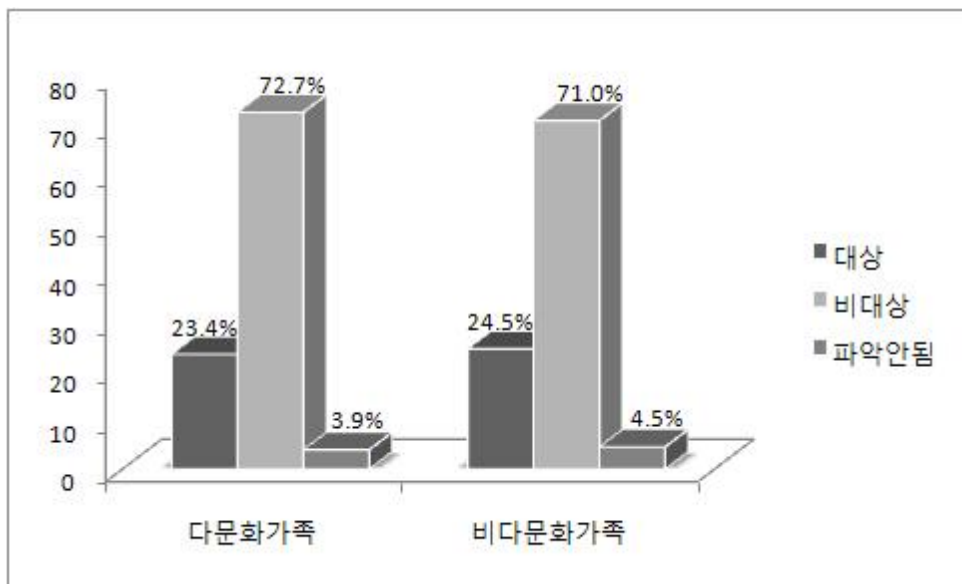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문제 결정요인

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0.4$ ,  $p>0.05$ ).

<표 11>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chi^2$
국민기초 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N(%)	대상	54(23.4)	0.4
	비대상	168(72.7)	
	파악안됨	9(3.9)	
		261(4.5)	

\* $p<0.05$ , \*\* $p<0.01$ , \*\*\* $p<0.001$



<그림 12> 학대행위자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 여부



## 6)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의 특성 비교

마지막으로 학대행위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본 내용은 2011년도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에 제시된 학대행위자 특성을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이 경우, 중복적으로 응답되었기 때문에 2011년 전체 아동학대 사례 건수인 6,058건을 초과하였으며, 카이제곱분석과 같은 통계 분석을 활용하지 않고 수치를 단순히 제시하였다(<표 12> 참조).

<표 12> 학대행위자의 특성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전체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N(%)	248 (31.3)	6,267 (31.9)	6,515 (31.8)
중독문제 N(%)	70 (8.8)	1,560 (7.9)	1,630 (8.0)
질환문제 N(%)	36 (4.5)	1,113 (5.7)	1,149 (5.6)
성격 및 기질문제 N(%)	74 (9.3)	1,782 (9.1)	1,856 (9.1)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N(%)	183 (23.1)	4,497 (22.9)	4,680 (22.9)
어릴 적 학대 경험 N(%)	11 (1.4)	384 (2.0)	395 (1.9)
폭력성 N(%)	40 (5.0)	815 (4.1)	855 (4.2)
전과력 N(%)	1 (0.1)	125 (0.6)	126 (0.6)
성문제 N(%)	2 (0.3)	169 (0.9)	171 (0.8)
원치 않는 아동 N(%)	2 (0.3)	244 (1.2)	246 (1.2)
부부 및 가족 갈등 N(%)	100 (12.6)	2,015 (10.2)	2,115 (10.3)
종교문제 N(%)	3 (0.4)	81 (0.4)	84 (0.4)
특성 없음 N(%)	4 (0.5)	137 (0.7)	141 (0.7)
기타 N(%)	10 (1.3)	233 (1.2)	243 (1.2)
파악 안 됨 N(%)	9 (1.1)	252 (1.3)	261 (1.3)
총 N(%)	793 (100.0)	19,674 (100.0)	20,467 (100.0)

### 3.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아동학대 관련 요인 비교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관련 요인 외에 아동학대 및 기타 관련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동거 여부, 학대 발생 빈도 변수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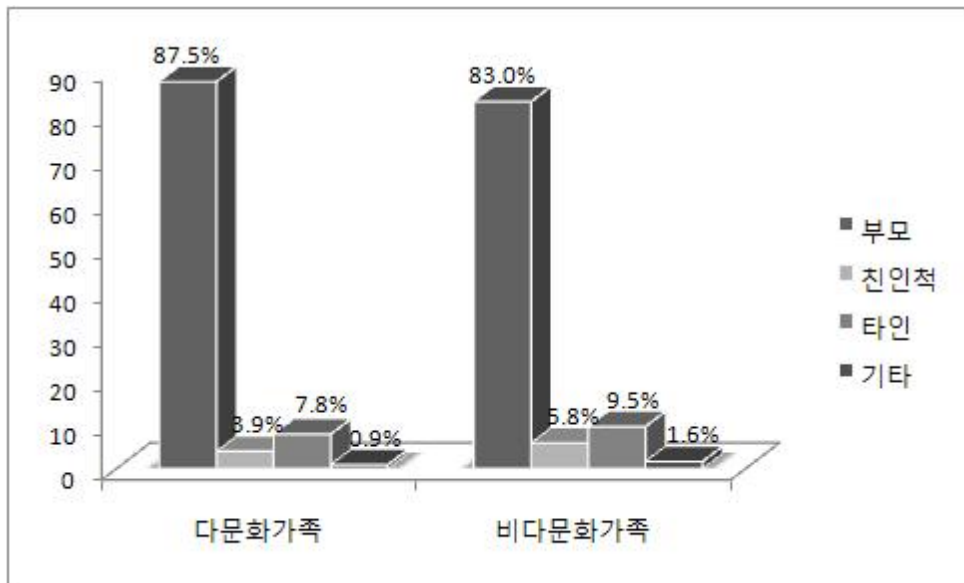
#### 1)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비교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집단에서 모두 피해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문화가족은 87.5%에 해당하는 202명이었으며, 비다문화가족의 경우는 4,837명(83.0%)이었다. 또한 다문화가족 사례의 경우, 피해아동과 관계가 없는 타인인 경우가 18명(7.8%), 친인척 9명(3.9%), 기타 2명(0.9%)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다문화가족 사례도 이와 유사하게 타인인 경우가 556명(9.5%),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인척인 경우가 340명(5.8%), 기타는 94명(1.6%)이었다. 또한 두 집단 간 관계의 양상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5$ ,  $p>0.5$ ).

<표 1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chi^2$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N(%)	부모	202(87.5)	3.5
	친인척	9(3.9)	
	타인	18(7.8)	
	기타	2(0.9)	
		4,837(83.0)	
		340(5.8)	
		556(9.5)	
		94(1.6)	

\*p<.05, \*\*p<.01, \*\*\*p<.001



<그림 13>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 여부 비교

다음으로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다문화가족 내 사례와 비다문화가족 사례에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다문화가족 186명(80.5%), 비다문화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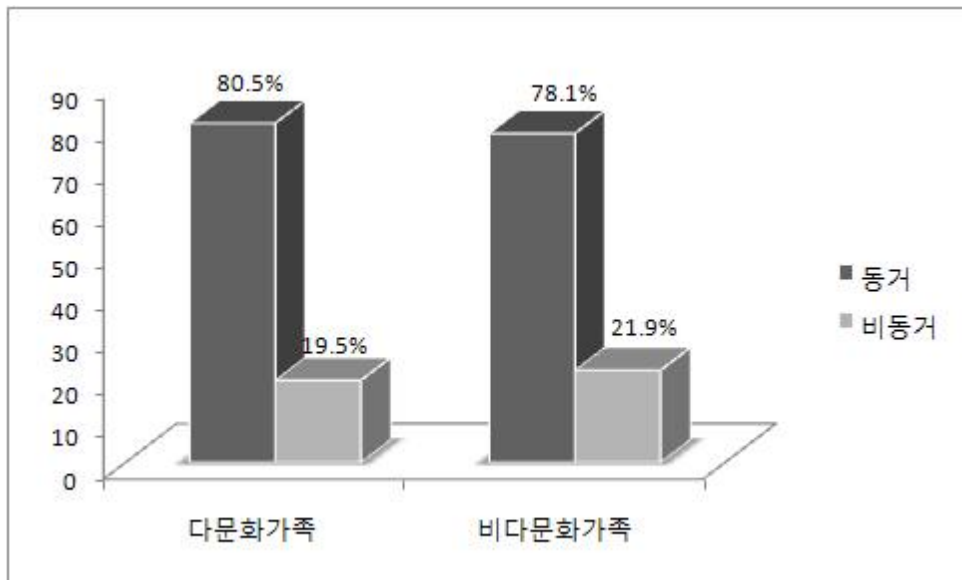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문제 결정요인

4,553명(78.1%)으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다문화가족에서 45명(19.5%), 비다문화가족에서 1,274명(21.9%)을 나타내었다.

<표 1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 여부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chi^2$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 여부 N(%)	동거	186(80.5)	4,553(78.1)	0.7
	비동거	45(19.5)	1,274(21.9)	

\*p<.05, \*\*p<.01, \*\*\*p<.001



<그림 14>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동거 여부

### 3)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간 학대 발생 빈도 비교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 발생 빈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15>를 통해 제시하였다. 먼저 다문화가족 내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례를 보면 학대 발생 빈도가 평균 7.2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경우, 1주일에 한 번 정도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비다문화가족 내 사례의 경우, 발생 빈도는 평균 7.1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다문화가족 사례와 유사하게 해석 가능하다. 두 집단 간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t=-0.5, p>0.05$ ).

<표 15> 학대 발생 빈도

구분	다문화가족	비다문화가족	t
학대 발생 빈도 M(SD)	7.2(2.4)	7.1(2.5)	-0.5

\* $p<.05$ , \*\* $p<.01$ , \*\*\* $p<.001$

### 4.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 문제 결정요인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경우, 정서·정신건강의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본 장에서는 정서·정신건강 중에서도 내재화 문제(우울, 불안, 무력감)를 종속변수로 하여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이 때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동학대 스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문제 결정요인

스크리닝 척도 요인 중 아동요인, 보호자요인, 가족요인 및 생활환경 요인을 선별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 밖에도 아동학대 발생 빈도와 아동의 성별 및 연령,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대상이 독립변수에 속하도록 하였다.

## 1)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우울 결정요인

내재화 문제 중 우울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6>에 제시되어 있다. 독립변수들 중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우울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의 하위요인 중 아동요인과 가족요인, 그리고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아동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아동의 우울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아동요인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아동에게서 학대로 의심되는 신체적 손상이나 위축된 모습 등의 아동학대 징후가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가족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즉, 가족 구성원 간에 폭력이나 갈등이 빈번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등 아동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족요인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우울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보다 우울감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6>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우울 결정요인

변수		$\beta$	S.E.	Wald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	아동	0.58***	0.14	16.95
	보호자	-0.09	0.10	0.78
	가족	0.15*	0.07	5.24
	생활환경	0.01	0.08	0.01
아동학대 발생 빈도		0.00	0.01	0.02
성별(남성)	여성	0.04	0.04	1.25
연령		0.01**	0.00	9.07
국민기초생활수급권(대상)	비대상	0.02	0.04	0.19
상수항		0.28	0.01	

\*p<.05, \*\*p<.01, \*\*\*p<.001

주: ( ) 준거집단

## 2)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불안 결정요인

다음으로는 내재화 문제 중 하나인 불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는 <표 17>과 같다. 분석 결과, 불안을 결정하는 요인은 유일하게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아동요인이었는데, 이는 아동에게서 다양한 학대 징후들이 두드러지게 발견될수록 불안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7>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불안 결정요인

변수		$\beta$	S.E.	Wald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	아동	1.06***	0.21	25.84
	보호자	0.03	0.14	0.05
	가족	0.08	0.10	0.68
	생활환경	-0.11	0.13	0.70
아동학대 발생 빈도		-0.01	0.01	0.94
성별(남성)	여성	0.00	0.06	0.00
연령		0.00	0.01	0.02
국민기초생활수급권(대상)	비대상	0.09	0.06	2.10
상수항		0.41	0.02	

\*p<.05, \*\*p<.01, \*\*\*p<.001

주: ( ) 준거집단

### 3)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무력감 결정요인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표 18> 참조). 무력감에 대한 결정요인은 독립변수들 중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아동요인과 가족요인, 그리고 연령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종속변수가 우울인 모형과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에게서 학대로 의심되는 신체적 손상이나 위축된 모습 등의 아동학대 징후가 두드러지게 발견될수록, 가족 구성원 간에 폭력이나 갈등이 빈번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등 아동학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족요인이 증가할수록, 또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다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무력감 결정요인

변수		$\beta$	S.E.	Wald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	아동	-0.23**	0.08	8.37
	보호자	0.10	0.09	1.14
	가족	0.20***	0.06	11.26
	생활환경	-0.02	0.08	0.08
아동학대 발생 빈도		0.00	0.01	0.29
성별(남성)	여성	0.01	0.03	0.12
연령		0.01**	0.00	8.72
국민기초생활수급권(대상)	비대상	-0.01	0.04	0.09
상수항		0.26	0.01	

\*p<.05, \*\*p<.01, \*\*\*p<.001

주: ( ) 준거집단





# 결론 및 제언

---



## V. 결론 및 제언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김지혜·정익중, 2009), 언어(김혜리·김은하, 2010), 인식 및 태도(심우엽, 2010), 프로그램 효과성(신효선·김도희, 2008)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학대 및 정신건강의 주제를 함께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내재화 문제(우울, 불안, 무력감)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우울과 무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 중 아동요인과 가족요인이며, 그 밖의 요인으로는 피해아동 연령이 있다. 즉, 학대로 인한 신체 손상, 극심한 위축, 불량한 청결 상태, 빈번한 학교 결석 등과 같이 아동에게서 학대를 의심할만한 요인들이 발견되거나 가족 구성원 간의 빈번한 폭력 및 갈등 발생, 경제적 불안정 등과 같이 가족 측면에서의 아동학대 위험요인들이 있을 경우 아동의 우울 및 무력감이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분석 결과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피해아동의 우울과 무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불안에는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 중 아동요인만 유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시 말해 아동에게서 학대를 의심할만한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날수록 피해아동의 불안이 두드러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내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사례로 신고 접수 될 경우, 학대행위자의 정신건강 측면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알콜 남용 등의 아동학대 발생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례관리를 진행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아동의 정서·정신건강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정·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1년도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통해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비다문화가족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볼 때, 사례 진행 의 각 단계에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높은 가능성을 감안하여 상담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에게서 학대를 의심할만한 증거 즉, 신체 손상, 극심한 위축, 불량한 청결 상태, 빈번한 학교 결석 등이 많이 나타날수록 아동의 내재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볼 때, 피해아동에 있어 내재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개입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는 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로 신고 접수된 사례에 해당하는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상담 및 치료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내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처 방안 마련이 미비한 실정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제반 환경을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어 면담 시 활용하게 되는 검사지 등의 치료도구를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등이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더라도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경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대면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체결함으로써 자문을 획득하거나 사례에 관련하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되었을 때, 아동보호전문기관 차원에서만 사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기관에 보고하여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모니터링 체계를 통하여 추후 아동학대가 재발생되는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 아니라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에서 사례를 진행하던 중 다문화가족 내 아동학대 사례가 발견될 경우, 보다 신속히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문화가족이 기존에 거주하였던 국가의 문화권에 따라 신념, 가치관 및 생활 방식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문화권 별 특성을 반영하여 이에 맞는 정신건강 관련 프로그램 및 개입 지침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가족구성원 관련 학대 요인들(가족원 간 폭력 및 갈등,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이 많을수록 아동의 정서·정신건강 문제가 다소 심각해진다는 사실을 비추어볼 때,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에 한정된 개입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유형을 살펴보면,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은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가족은 유기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온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된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입 방안을 마련하여 지향할 필요가 있겠다. 20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가족기능강화사업의 하나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던 가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이야기 치료 기법을 주로 활용하여 8회기 동안 진행되었는데,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가족 단위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존재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이유에서 가족 단위의 집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아동의 정서·정신건강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인지 능력이 발달함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여러 선행 연구에서 위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내용이 도출되었다(정현숙, 1993; 주소희, 2003). 이와 더불어 다문화가족 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사회 구성원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부족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수용 부족으로 인해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교육기관 등에서는 다문화가족 내 아동이 이러한 부정적인 환경 요인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



해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본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화 문제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문제의 여부만을 체크할 수 있어 피해아동의 내재화 문제를 포함한 특성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위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에 있어 내재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내재화 문제의 결정요인을 증명함으로써 아동 발달의 저해 요인인 내재화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효립(2007). 탈북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령(2005). 탈북자의 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성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1), 193-217.
- 김범수 외(2007). 현대유럽정치론. 서울대 출판부.
- 김순규(2007). 보호요인이 피학대 아동의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9(2), 251-275.
- 김은경·이정숙(2009). 아동의 학대 경험이 정서와 인지적 편향을 매개로 우울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1-18.
- 김재엽·조학래·양혜원(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5, 27-54.
- 김지혜·정익중(2009). 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책에 나타난 통합 관점에 대한 고찰. 한국아동복지학, 30, 7-40.
- 김혜리·김은하(2010). 다문화 아동문학 텍스트 기반 반응저널 쓰기를 통한 초등영어와 문화의 통합교육. 초등영어교육.
- 김혜영·장화정(2002). 아동학대 유형별 영향을 미치는 부모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6(2), 269-285.

- 목혜연(2007). 새터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화옥(2004). 아동학대 재발생의 유형과 요인에 대한 다변량 생존분석. 한국아동복지학, 18, 63-83.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 신효선·김도희(2008). 농촌지역 다문화아동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심우엽(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 아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초등교육연구, 23(4), 43-63.
- 안동현 외(2003). 신고된 사례의 아동학대 실태와 후유증 연구. 아동권리연구, 7(1), 121-139.
- 안혜영(1998). 어머니의 아동학대에 관한 예측모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명용(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8, 147-175.
- 이광성(2012). 다문화가정자녀의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44(1), 91-107.
- 이기영(2002).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3(1), 175-224.
- 이기영·박영희·엄태완·김현경·김현아(2009). 이주난민의 정신

- 건강과 상담. 서울: 나눔의 집.
- 이아영(2011). 초등학생 공격성의 영향요인: 부부 간 폭력과 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선(2004).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박은미·황옥경·김형모·이은주·강현아(2008). 아동복지론. 학지사.
- 장화정(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권리연구, 8(4), 777-792.
- 전대양(2000). 학대아동의 일탈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9, 195-225.
- 전해숙(2008). 아동학대 및 아동의 심리사회적 자원이 아동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0, 55-77.
- 정현숙(1993).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적응. 아동학회지, 14(1), 59-76.
- 조미숙(2012). 청소년 자녀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1), 1-19.
- 주소희(2003). 부모이혼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이혼가정 자녀의 심리·행동적응문제와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 12, 179-210.
- 채송희(2009). 한국 주재 국제학교 학생들의 이문화수용 스트레스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연령별( 시도 ) 추계인구.
- 표갑수(1993). 아동학대의 원인론과 대처방안. 한국아동복지학, 1, 156-177.
- 한인영·정슬기·김현수·유서구(2006). 아동방임에 대한 가족의사 소통의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 257-286.
- Aalsma, M. C., & Brown, J. R. (2008). What is bullyi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3, 101-102.
- Dubowitz, H., & Bennett, S. (2007). Physical abuse and neglect of children. The Lancet, 369(9576), 1891-1899.
- McCarty, C. A., Mason, W. A., Kosterman, A. R., & Hawkins, J. D. (2008). Adolescent school failure predicts later depression among girl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3(2), 180-187.
- Moon, S. S., & Deweaver, K. L. (2005). An empirical test of the multicultural/multimodal/multisystems(Multi-CMS) approach for Kore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Social Work Research.
- Schuck, A. M., & Widom, C. S. (2005). Understanding the role of neighborhood context in the long-term criminal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6(3), 207-222.

- Ttofi, M. M., Farrington, D. P., Losel, F., & Loeber, R. (2011). Do the victims of school bullies tend to become depressed later lif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3(2), 63-73.
- Widom, C. S. (1996). Childhood sexual abuse and its criminal consequences. *Society*, 33, 47-53.
- Zingraf, M. T., Leiter, J., Myers, K. A., & Johnsen, M. C. (1993). Child maltreatment and youthful problem behavior. *Criminology*, 3(2), 173-202.





## [ 연구진 ]

장 화 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최 윤 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팀장)

김 기 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상담원)

강 주 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상담원)

이 지 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상담원)

## 다문화가족 내 피해아동의 내재화문제 결정요인

┃ 인 쇄 일 : 2012년 12월

┃ 발 행 일 : 2012년 12월

┃ 발 행 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02-558-1391)

┃ 발 행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 편 집 인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연구개발팀



